

第105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第1號(附錄)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 次

1.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文化福祉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 1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等中改正條例(案) ..... 7面

1.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765
----------	-----

제출년월일 : 2000. 10.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제정이유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실시에 대비하여 사전에 기반을 구축하고 시범실시 중인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린(2000.1.13) 준칙에 의거 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주민문화복지센터 (안 제2장)
  - 주민문화복지센터는 동장책임 하에 운영,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안 제7조3항, 안 제10조2항)
  -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보상 근거(안 제13조)
  - 년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안 제14조)
-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안 제3장)
  -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안 제15조)
  - 위원회에는 상임고문을 두며 관할구역 구의원으로서 함(안 제17조)
  -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 근거(안 제23조)

3. 제정근거

-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행정자치부)
  - 서울특별시 행정 13101-76 (2000. 1. 13)

4. 예산수반사항 : 필요없음

5. 제정(안)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호

###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문화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문화복지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문화복지센터(이하 “문화복지센터”라 한다)의 주민문화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 제2장 주민문화복지센터

제4조(설치 등) ①문화복지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문화복지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문화복지센터의 동사무소별 명칭은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의 의견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기능) ①문화복지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2.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4.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5.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②제1항의 기능 중 당해 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구청장은 문화복지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문화복지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입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문화복지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문화복지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동장이 한다.

②동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문화복지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문화복지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구청장과 동장은 문화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문화복지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문화복지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화복지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문화복지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동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시설물 사용료는 시간당 10,000원, 수강료 등은 1인 월 10,000원 이하로 정한다.

제11조(이용등) ①주민은 문화복지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문화복지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구청장과 동장은 문화복지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문화복지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복지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문화복지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동장은 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제15조(설치) 동사무소의 문화복지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 문화복지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문화복지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문화복지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구성 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 ④위원회에는 상임고문을 두며 관할구역 구의원으로 한다.
- 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 ⑥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문화복지센터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2.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66.
----------	------

제출년월일 : 2000. 10.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자체 사무·인력·기구조정 확정방침에 따른 조정내용을 자치법규 개정내용에 반영하여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 그동안 일부 시범동에만 적용되었던 자치법규를 전체 동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조례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
  - 행정관리국내 자치행정과 편제 (안 제4조제1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문화진흥과, 여권과)
-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시체 매·화장신고” 내용 삭제 ([별표] 위임사무)
-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 융자금 대부신청 및 반환시 거주지 동장 경유내용 삭제 (안 제6조제1항,제16조제2항)
-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
  - 동장관련 규정내용 삭제 (안 제6조제1항)
-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
  - 동장관련 규정내용 삭제 (안 제25조제2항)

3. 개정근거

- 동기능전환확대시행지침 (행정자치부, 2000.3.6)
- 동기능전환 관련 “존치·이관사무, 인력·기구조정” 확정 (구청장방침, 2000.9.8)

4. 예산수반사항 : 필요없음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문화진흥과 및 여권과를 둔다”를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문화진흥과 및 여권과를 둔다”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위임사무)와 관련 별표중 2.시체 매장(화장,개장)신고란을 삭제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거주지 동장(명륜3가동장 및 송인제1동장은 제외한다)의 추천을 받아”와 제16조제2항중 “거주지 동장(명륜3가동장 및 송인제1동장은 제외한다)을 거쳐”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를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구청장 및 동장(명륜3가동장 및 송인제1동장은 제외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구 분청 기구 중 자치행정과는 존속기한을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 제3조 (생략) 제4조(행정관리국) ①행정관리국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문화진흥과 및 여권과를 둔다.  ② (생략) 제5조 ~ 제14조 (생략)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행정관리국) ①행정관리국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문화진흥과 및 여권과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 ~ 제14조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 [별표]위임사무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 [별표]위임사무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1.(생략) 2.시체매장(화장, 개장)신고 3. ~ 17.(생략)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	동장	1.(현행과 같음) < 삭제 > 3. ~ 17.(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1조 ~ 제5조 (생략)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①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명륜3가동장 및 승인제1동장은 제외한다)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략)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1조 ~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①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7조 ~ 제15조 (생략) 제16조(융자금 반환) ①(생략) ②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기일 도래이전에 주민등록을 타지역으로 전출할 시는 미리 거주지 동장(명륜3가동장 및 승인제1동장은 제외한다)을 거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 제19조 (생략)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7조 ~ 제15조 (현행과 같음) 제16조(융자금 반환) ①(현행과 같음) ②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기일 도래이전에 주민등록을 타지역으로 전출할 시는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 제19조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 제1조 ~ 제5조 (생략) 제6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의2 ~ 제33조 (생략)</p>	<p>[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 제1조 ~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 -----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 ----- 제6조의2 ~ 제33조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 제1조 ~ 제24조 (생략) 제25조 (규격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생략)  ②구청장 및 동장(명륜3가동장 및 송인제1동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 제43조 (생략)</p>	<p>[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 제1조 ~ 제24조 (현행과 같음) 제25조 (규격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 제43조 (현행과 같음)</p>